

2018년 회원등록 안내

의료법 제28조 :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2017년 미등록자가 2018년 회원등록시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1조(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에 의해 직전연도(2017년) 일반회비를 소급 적용한다.(개정 2014.12.23)

1. 회비(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구분	일반회원	일반 신회원	평생 전환회원	평생 신회원	평생회원
2018년 회비	78,000원	104,000원	1,950,000원	1,976,000원	납부금액 없음
2017년 소급분	78,000원	78,000원	78,000원	78,000원	
면제(2018년)	<p>1.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p> <p>1) 승인 기준</p> <p>① 1월 1일~12월 31일까지 군 복무자만 인정 (11월 전역자, 2월 입대자 미 인정)</p> <p>② ①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백기간 중 비 활동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면제 인정</p> <p>-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p> <p>2) 증빙 서류 : 복무확인서, (필요시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p> <p>2. 회계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p> <p>1) 승인 기준</p> <p>① 해당 연도에 만 65세 이상 (2018년도 기준 1953년생)</p> <p>② 년회원정보 총 등록기간이 15년 이상</p> <p>2) 증빙 서류 : 면허증 사본</p>				
감액(2017년)	<p>1. 회계연도 직전 1년 동안 비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자(육아휴직자 제외)</p> <p>1) 승인 기준</p> <p>① 직전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자</p> <p>② 3년 이상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자 (2년까지만 육아휴직급여 나눔)</p> <p>③ 병가로 소득이 없는 자</p> <p>2) 증빙 서류</p> <p>①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p> <p>② 국민연금(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홈페이지 상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혹은 무급휴직증명서</p> <p>③ 국세청 사실증명서</p> <p>2.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p> <p>1) 승인 기준</p> <p>① 직전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군 복무자</p> <p>②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p> <p>③ ①항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백기간 중 비 활동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감액 인정</p> <p>-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p> <p>2) 증빙 서류 : 병적증명서, (필요시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p>				

2. 등록

1) 송금계좌

- 농협 : 143-01-004757 경기도간호사회
- 우리 : 1005-403-433908 경기도간호사회

2) 제출서류

- 개인등록 :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평생회원 신청 시 메일 또는 우편으로 증명사진 첨부)
또는 본회 홈페이지 → 회원등록 → 온라인서류 제출
※입금 시 확인전화 또는 면허번호,입금자명을 입력하여 송금 (예:123456홍길동)
- 단체등록 : 회비 내역서, 회비 납부자명단,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제출
- 공통사항 : 2014년 이후 신규면허취득자는 회원 등록 시 회원신고서에 면허정보 기입 또는 면허증 사본 제출(서류 미비로 등록 불가한 경우 납부된 회비는 반환)
- 서식 다운로드 : 경기도간호사회 홈페이지 → 자료실 → 각종신청서 양식
- 메일주소 : kki@koreanurse.or.kr
- 팩스번호 : 031)252-0647

3. 납부기간 : 2018년 3월 7일(수)~2018년 11월 30일(금)

4. 각 기관에서 대한간호협회 회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반드시 '단체회비납부동의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보관)

5. 4월 1일(일) 00:00부터 KNA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URL : membership.koreanurse.or.kr)에서도 회원등록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PC와 모바일 모두 동일)